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단20348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B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4. 8. 22.

판결 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74,121,134원 및 그 중 72,700,0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37,060,567원 및 그 중 36,350,017원에 대하여

각 2013. 1. 14.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2. 5. 1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292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1. 6. 24.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처를 주식회사 부산은행, 보증금액 68,850,000원, 보증기한 2012. 6. 2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가 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피고에게 구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망 F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의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6. 15.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사유 : 휴·폐업)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4.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72,700,0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2. 5.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순위 동서인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5. 1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8,338,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시부모인 피고 D, E을 모시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2. 5. 14.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7,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F의 처이고, 피고 C는 망 F의 형수이자 피고 B의 순위 동서로서 피고 A 주식회사, B의 자력 악화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피고 C 스스로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아

별지